



대 야 가 정 통 신

배움을 즐기며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꿈 터

대야초등학교
교무실:031-363-3003
행정실:031-363-3006
팩스 : 031-363-3090

2024 출결관리 안내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128일 이상 확보

① 결석의 종류 → 결석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휴일 미포함)** 제출

구분	
질병 결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외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p>※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p>
미인정 결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등)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7.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초과한 경우 8. 그 외 출석인정 결석과 병결을 제외하고 모두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p>※ 미인정결석 시 처리 방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석 1일~2일: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일~5일: 가정방문 등 학생 출석,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 3) 결석 6일: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 요청 4) 결석 7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기타 결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장기 결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일 초과'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토요일 휴무일 및 공휴일,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포함하지 않음.
참고	지각, 조퇴, 결과는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경우 (각 10회 이상일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각각 별개로 함.)

● 출석인정결석

순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참고 (연간 20일까지 가능 → 가정학습 없어짐) 	* 신청서 → 결과보고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 결석신고서 + 증빙서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허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① 경기 및 대회참가공문 ② 참가 확인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없음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없음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결혼</td> <td rowspan="2">형제, 자매, 부모</td> <td rowspan="2">1</td> <td rowspan="3">사망</td> <td>부모, 조부모, 외조부모</td> <td>5</td> </tr> <tr> <td>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3</td> </tr> <tr> <td>입양</td> <td>본인</td> <td>20</td> <td>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p>※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p>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모	1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p>*결석신고서+사망진단서 *결석신고서+부고장 캡처본 *결석신고서+청첩장 캡처본 등</p> <p>(위의 방법 중 하나 선택)</p>
구분	대상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모	1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입양	본인	20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6	<p>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월 1회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p>	* 결석신고서																			
7	<p>법정 감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독감 등) 및 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p>	* 결석신고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